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3151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엄세연, 이창화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18. 선고 2019가단5623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 6.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4.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는 2016. 11. 22. C에게 2,0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19. 11. 22.,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D 주식회사는 2017. 12. 5.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2017. 11. 13. 기준 원금 19,974,646원, 연체이자 4,458,876원, 기타비용 52,8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C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39132 양수금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26,761,297원 및 그 중 19,974,646원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8. 6. 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3.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 자녀들인 G, 피고, C, H이 있었다.

2) 위 상속인들 사이에 2018. 4. 4.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 협의'라 한다)가 있었고, 이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8. 4. 6. 접수 제34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로 C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2018. 4. 18. 1,000만 원, 2018. 6. 14.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

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피고는 C의 상속지분의 가액보다 많은 3,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채무 존부나 그 금액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C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시가보다 많은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C과 형제 사이로서 C의 평상시 경제적 형편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3,000만 원을 C의 계좌가 아닌 그 아들인 I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로서도 C이 본인 계좌로 돈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C과 피고 측 가족들의 진술 외에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나 이 법원에서 증인 I이 한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¹⁾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규

판사 권준범

판사 예혁준

별지

부동산 목록

- 1. 경상북도 고령군 대 311㎡
- 2. 경상북도 고령군 대 145㎡ 끝.